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93호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원시민의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
----------	-----

발의연월일: 2023. 8. 29.

발 의 의 원: 성보빈 · 강창석 · 구점득 · 김경희 · 김묘정
김미나 · 김수혜 · 김혜란 · 남재욱 · 박선애
박승엽 · 이원주 · 이정희 · 이종화 · 이해련
정순옥 · 진형익 · 최정훈 · 한은정 · 홍용채
황점복 의원(21명)

찬 성 의 원: 손태화 의원(1명)

1. 제안이유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원시민의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
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지킴이”란 창원시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창원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기여한 사람 등에게 「창원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에 따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재지킴이 단체"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재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10조(활동 범위)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
2. 문화재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
3. 문화재 순찰 및 감시활동
4. 문화재 홍보 및 교육활동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용역 제공
6. 문화재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
7. 문화재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활동
8. 기타 당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